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19호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2022.6.2.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토록 함의로써,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와 중첩되는 이행충돌방지규정 삭제(7개 조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안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안 제5조)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안 제6조)
- 가족 채용 제한 삭제(안 제7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안 제8조)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삭제(안 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안 제23조)

○ 용어의 정비 및 개념 명확화

-'전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자 병행 표기(안 제17조 제2호)

-'산하기관'용어 설명 규정 표기(안 제17조 제3호)

-'서식'의 용어 설명 규정 표기(안 제20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별도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9. 13.(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2) 전화 : 061-830-6065,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가"를 "전가(傳家)"로 한자와 병행 표기하고하며,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고흥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고흥군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식"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5조,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삭 제>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소	

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삭 제>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이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의회, 군 및 그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 및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삭 제>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및 그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 ---------- ----------.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삭 제>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傳家)----------
3. 군 또는 그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고흥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가. 고흥군청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고흥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고흥군의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4. ----------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

행위	---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삭 제>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	<삭 제>

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

외한다), 용역, 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